

“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.”



법원행정처

수신자 임그루(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A동 103호(한국
통신사원아파트))

경유

제목 민원회신(임그루)

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(2022. 03. 31. 신청번호 : 1BA-2203-0920417)
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.

1. 귀하의 민원요지는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
독립하여 심판한다.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 중 ‘양심에 따라’ 부분을 삭
제하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취지로 보입니다.
2. 법령의 제·개정과 관련하여 헌법은 ‘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’ (제40조), ‘국
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’ (제52조)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.
헌법 개정과 관련된 것은 그 권한이 있는 국회나 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
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법원행정처장



법원주사보

강현희

법원사무관

정철호

과장

정경원

국장

전결
04/13
조철곤

협조자

시행 종합민원과-3160 (2022.04.13.) 접수 ()

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/ http://www.scourt.go.kr

전화 02-3480-1423 /전송 02)536-0296 / spining@scourt.go.kr / 공개